

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[별표 3]

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(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)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 - 2)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마.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,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1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4항제2호	경고	지정취소	
다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21조 제4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